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96
------	-----

2007년 9월 4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8월 21일
 다. 상정일자 : 제16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
 (2007년 9월 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정동진)

가.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점용료 산정기준 중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용료 700,000원 상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가) 점용료의 산정 기준 일부를 수정함.

-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안 별표 1 비고 2)
-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의 점용률의 종류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률의 점용 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률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함.(안 별표 1 비고 5)
- 점용률 중 버스카드판매대·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의 산정된 점용료가 700,000 원을 초과할 경우 700,000원으로 하던 것을 삭제함.(안 별표 1 비고 11)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전문위원 임령)

- 지난 서울시의회 제166회 임시회(2007. 3.13~3.27)에 서울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 일부 개정안 중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교통카드판매대)의 점용료 상한규정(상한액 70만원) 폐지부분에 대해, 의회심사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논의키로 하고 일단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함에 따라, 행자부가 이를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법조항으로 단정, 재의요구(2007.4.13)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차후 개정할 것을 전제로 우선 공포·시행(2007.4.17)하였는바, 서울시는 행자부와의 약속을 이행코자 금번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동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점용료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협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점용료 70만원 상한규정 폐지에 대한 의견(현행조례 [별표 1] 비고 11)

- 동 점용료 상한규정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으로, 서울시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그동안 특혜적 차원에서 운용해 왔으나,
- 행자부가 이를 법령의 위임한계를 일탈한 위법조항으로 단정하여 재의요구한 점과,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타 점용시설물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는 있다 하겠음.
-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결사항에 대해 주

8)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무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때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재의요구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서울시가 행자부에 「서울특별시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등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할 때 동 조례도 개정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독단적으로 공포·시행하였는바, 재의요구에 대한 수용여부의 결정권은 전적 의회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표 1]은 2006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료 부과 총액 7억8천9백만원에 대한 금액대별 해당 개소현황을 나타내며, 만일 점용료 상한규정을 폐지할 경우 700,000원을 초과하는 개소들의 분포가 [표 2]와 같이 되며 점용료 산정 총액은 8억8천5백만원이 되어 종전대비 약 12%(9,5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게 됨.

[표 1] 2006년도 보도상영업시설물 점용료 금액대별 부과 개소현황

(단위 : 개소)

총 계 (개 소)	10만원 미만	10만원이상 ~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 40만원미만	4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50만원이상 ~ 60만원미만	60만원이상 ~ 70만원미만	70만원
3,633	734	1,244	659	415	193	134	83	171

※ 2006년도 점용료 총 부과액 : 789,726천원

[표 2] 상기 [표 1]에 대해 점용료 상한규정 폐지시

(단위 : 개소)

총 계 (개 소)	70만원 미만	70만원이상 ~ 100만원이만	100만원이상 ~ 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 ~ 200만원미만
3,633	3,454	144	35	-

※ 70만원이상~150만원미만 : 179개소(종로 63, 중구 71, 서초 8, 강남32, 송파 5)

※ 2006년도 점용료 산정 총액(상한규정 폐지시) : 885,235천원

나. [별표 1] 비고 2의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

- 서울시는 그동안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되,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는 일수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단서조항을 운용해 왔으나, 이 또한 상위법령에서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고 단서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조례운영에 문제 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상위법령에 맞추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다. 기타 의견

- 현행 [별표 1] 비고 5의 문구 개정 및 비고 7, 8의 삭제 역시, 영 [별표 2]의 비고와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며, 현행 비고 7, 8의 경우 상위법령과 달리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별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비고 9에서 지하 깊이에 따른 감액규정이 있고, 비고 8의 경우 동일한 점용물에 대해 점용료 산정기준이 전혀 다르게(예를들어, 지상은 정액제로 지하는 정율제로 적용 받는 등) 운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위법령에 맞추어 비고 7, 8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 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일치 찬성)
 9.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